

03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정보운동
**A C T
O N**

진보네트워크센터
03 2007년 겨울/2008년 봄

03
2007년 겨울/2008년 봄

정보운동 액트 **ACT**



특별기획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ACT ON

정보운동 Act On

액트 온

통권 제3호 | 2007년 겨울 / 2008년 봄



진보네트워크센터

코드 : 전화 한 통

얼마 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후원하시는 한 회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액트온>을 더 이상 받아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액트온의 글이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내용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흐르는 ‘정보화의 물결’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글이니까요. 상관없어 보였다면 그 물결이 너무 일상적이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회원님과 제가 대화를 주고받았던 전화기를 둘러싸고 지난 100여 년 간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가요? 인터넷의 근간이 된 1:1 통신으로써, 엄청난 독점 이윤을 안겨다주는 특허로써, 최근에는 미디어 융합의 한 축으로써 너무나도 일상적인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일상은 그 어떤 혈리우드산(産) 스페터클보다도 역동적입니다. 그 역동성을 가장 제한된 언어인 ‘문자’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께서 느끼셨던 거리감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액트온>은 이번에 정보화와 정보화 시대의 권리에 대한 특별 기획을 선보입니다.

(*) 독자 여러분께서 평생 소장하실 수 있는 책을 만드느라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불어 재정 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07년 겨울/2008년 봄 통합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홍지운 | idiot@jinbo.net

액트온
개간 정보운동 ActOn
2007년 겨울~ 2008년 봄 | 통권 제3호

발행일 2008년 3월 20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흥지은

편집 달군

표지 달군

사진 박김형준·피차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13번지 정봉원빌딩 5층

홈페이지 webzine.jinbo.net

이메일 webzine@jinbo.net

전화 02-701-7687

팩스 02-701-7112

ISSN 1976-1953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정보·인권에 접속하다!

글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야기 만화 : 도단이 dodanee@hanmir.com

도단이님은 노동만화네트워크 <蠹꽃>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물상자>, <서울의 택시기사 허세숙 씨>, <대추리 풍경>등의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교재 만화 : 달과껌 dontrun@jinbo.net

달과껌님은 노동만화네트워크 <蠹꽃>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땅과 길의 소중함, 2006년 대추리>등의 작품을 그리셨습니다.

3 코드 : 전화 한 통

ActOn 0001 정보인권이란?

- 10 세계인권선언 제1조
- 11 정보인권에 접속하시겠습니까?
- 17 정보인권에 대하여

ActOn 0010 표현의 자유

- 26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27 닫힌 일기장
- 39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ActOn 0011 프라이버시권

- 60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61 K양의 하루
- 72 프라이버시권에 대하여

ActOn 0100 정치적 권리

- 90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91 소라의 권리찾기
- 101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ActOn 0101 노동권

- 114 세계인권선언 제23조
- 115 다 보여요 미선씨~
- 123 노동권에 대하여

ActOn 0110 저작권

- 140 세계인권선언 제27조
- 141 어떤 재판
- 149 저작권에 대하여

ActOn 0111 특허

- 168 세계인권선언 제27조
- 169 내 친구 덕이
- 177 특허에 대하여

ActOn 1111 평등권

- 188 세계인권선언 제2조
- 189 당신들의 평등을 위해
- 199 평등권에 대하여

210 독자공간

개간 〈정보운동 액트온〉의 저
작권은 각 저작물의 저작자에
게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선
스 2.0:영리금지〉에 따라, 출
처와 저작자를 명시하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공
연·방송·전송·전시·배
포·2차적 저작을 작성·편
집물의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
업적인 이용의 경우에는 개간
〈정보운동 액트온〉과 협의해
야 합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2.0 :
www.freeuse.or.kr/licenses/e/2.0/yg/

가치있는 정보 너만 가질래? 우리 함께 나눌래? 이제는 저작권과 정보독점 족쇄를 벗어던지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www.freeuse.or.kr로 방문해주세요.



왠지 카피레프트, 자유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리눅스, 정보인권이 땡기는 사람들...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선택합시다~

인터넷 정보나눔의 자유지대, 함께 만들어가요~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4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허용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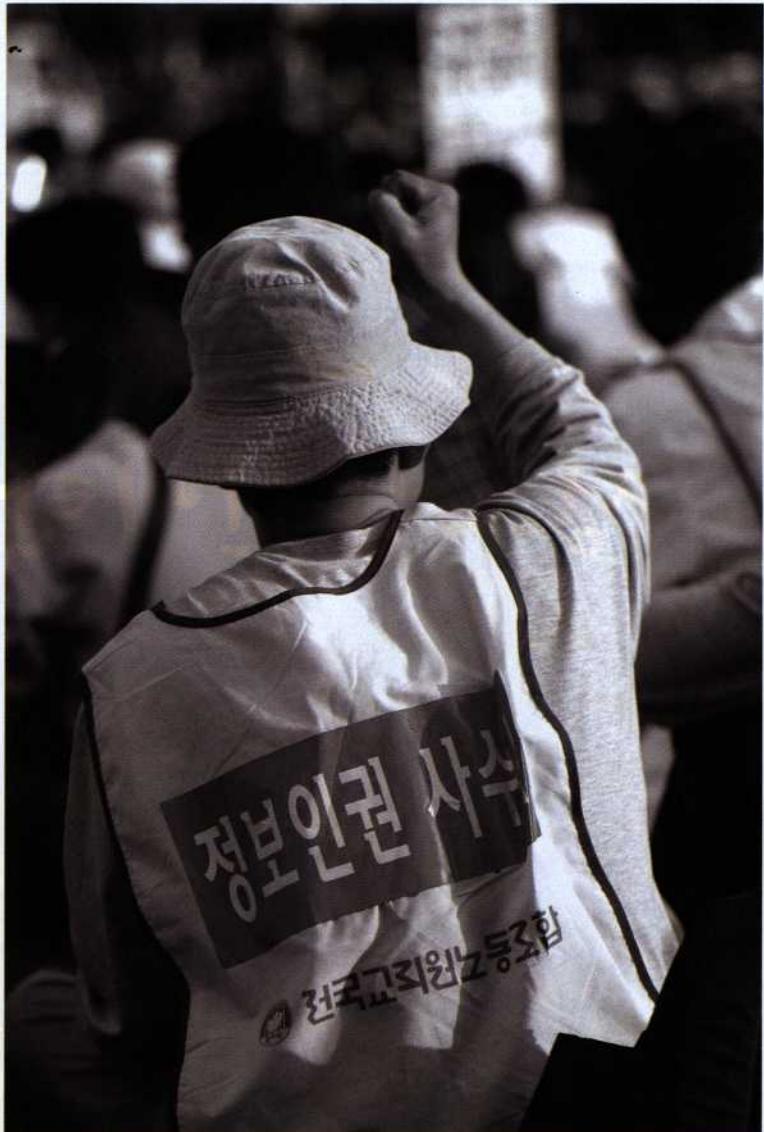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개작금지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 개작금지

www.freeuse.or.kr

정보인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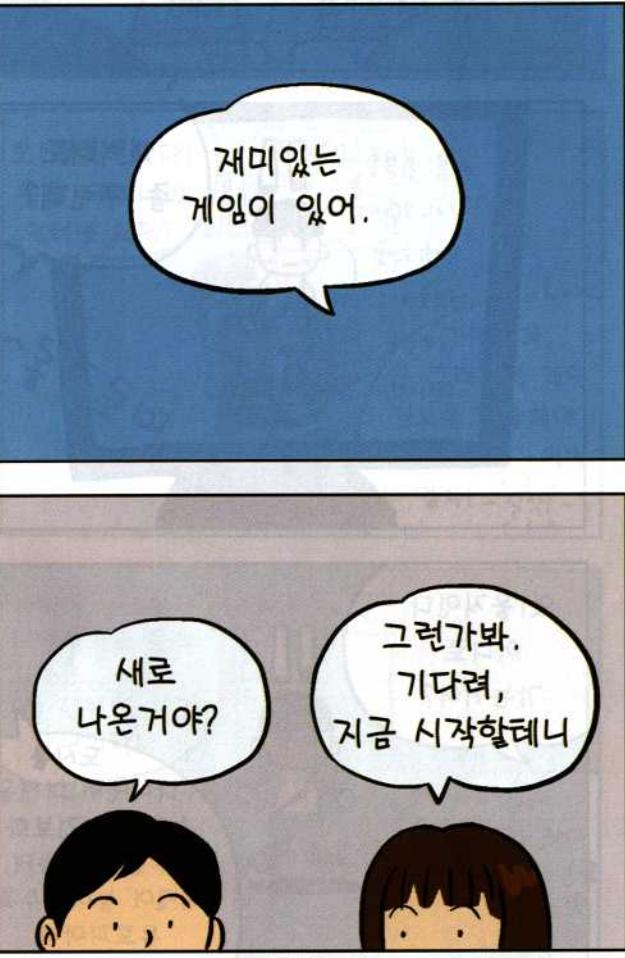
- 10 세계인권선언 제1조
- 11 정보인권에 접속하시겠습니까?
- 17 정보인권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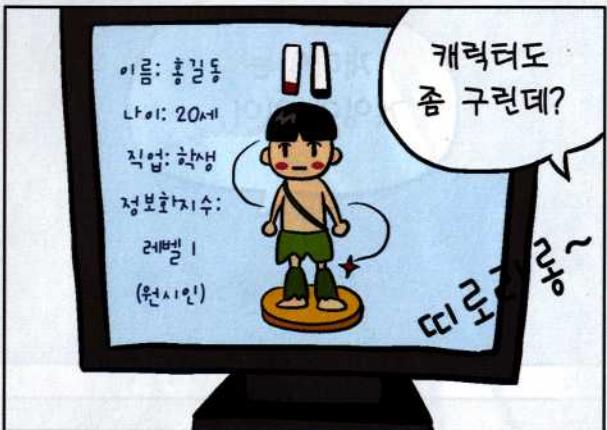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정보인권에 접속하시겠습니까?









어떤 정보사화가 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정보인권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압도적인 '정보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듯 하다. 특히 일반 민중에게 있어 인터넷은 반가운 존재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가 언론에 의해 독점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자신의 의견을 글로, 그림으로, 그리고 UCC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낙관론자들은 정보화로 인권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 활동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한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을 자유로이 공유하자고 선언하였다.

위협적 정보화

그러나 인터넷은 등장하자마자 검열 논란에 휩싸인다. 정부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되는 사람만 주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IP주소 보관과 추적이 확대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게시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당사자의 항변 절차도 없이 무조건 삭제된다.

감시는 확대되었다.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통신을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모두 보관되었다가 마케팅용으로, 수사용으로 사용된다. 거리와 직장 곳곳에 CCTV가 설치되었고 지문과 같은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그에 따르는 국내 법률들은 저작권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공정 이용의 권리를 축소하고 있다. 날로 강화되는 특허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마저 제한하여 민중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노동권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생산 시설에 도입된 정보화는 실업과 고용 불안을 낳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도 위협받고 있다.



정보 사회는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상업적, 경제적, 군사적 할 것 없이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이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허버트 슐러는 여기에 중요한 한 마디를 덧붙인다.

“그 정보의 대부분은 선진산업국가의 거대기업, 정부관료조직체 및 군사적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된다.”

정부가 행정 효율을 꾀하기 위해, 시장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반 민중의 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인권이란

이런 상황에서 ‘인권’은 우리가 의지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보루이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그에 따르는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각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물론 인권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대인권의 개념이 탄생했던 근대시민혁명 당시 인권은 재산권적 자유권을 우선시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외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의 부단한 투쟁 속에서 인권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기존의 인권 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남성·자본가 계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제3세계 국가들과 여성, 유색인종, 아동,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권의 범주가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발전권, 문화권, 평화권, 환경권 등 집단적 권리가 발전하고 있다.

정보 인권



특히 주목할 점은 미디어 이용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는 점이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 매체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화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인권 운동은 전자주민카드 반대, 지문날인 거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운동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CCTV 등 감시 장치를 거부하려는 투쟁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

이처럼 정보화 시대의 인권에 대한 요구가 아래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정보인권'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정보인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인권에서부터 출발한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보호, 통신 비밀의 보호, 문화예술 향유의 권리, 노동권, 참정권,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주목해야 할 인권들이다.

이 권리들은 정보화 사회일수록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고, 동시에 최근 정보화로 인한 변화 속에서 부쩍 위축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인권은 기존의 인권 개념이 정보화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망하고, 이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보 사회는 지금과 다른 사회가 아니다. 미래는 기술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이 계속 존
 중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다.

국가와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화를 주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통제 하에 추진되
 고 있는가에 대하여 감시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용자의 힘, 민중의 힘, 노동자의 힘으로 정보화를 전복
 적으로 활용하고 그 민주적 잠재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해야 한
 다.

어떤 정보 사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데 달렸다. 바로 당신의 실천
 이 필요하다.



다양한 권리

표현의 자유

- 26 세계인권선언 제19조
- 27 달린 일기장
- 39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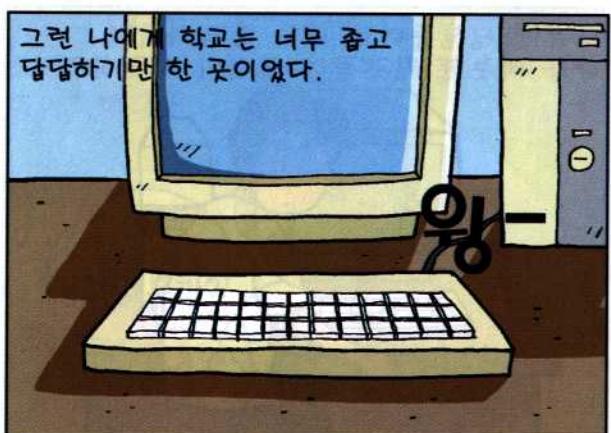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닫힌 일기장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안으로 가둬둘 수 밖에 없었던 우울한
시절의 기록..



매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는
이발사의 심경을 상상하며 일기를 썼었다.
이젠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정보화 시대.. 다양한 주장과 정보의
바다에서 유영하는 첨단의 세상..
그러나, 누구를 위한 정보화일까?



세상은 여전히 나에게,
아무도 없는 갈대숲에 숨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치라고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자기 주장을 발표할 수 있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주장을 제 맘대로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복잡해진 인터넷 시대의 표현의 자유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개인의 표현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다. 사상 또는 양심의 자유란, 자신의 내심에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를 가질 수 있는 자유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의견이라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표현의 자유 문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권력이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언론, 출판 수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특히 현 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기존의 권력과 밀접한 언론과 출판에 의해 제한되기 쉽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자기 주장을 외치며 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 비판과 다양한 주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획일적 목소리로 가득차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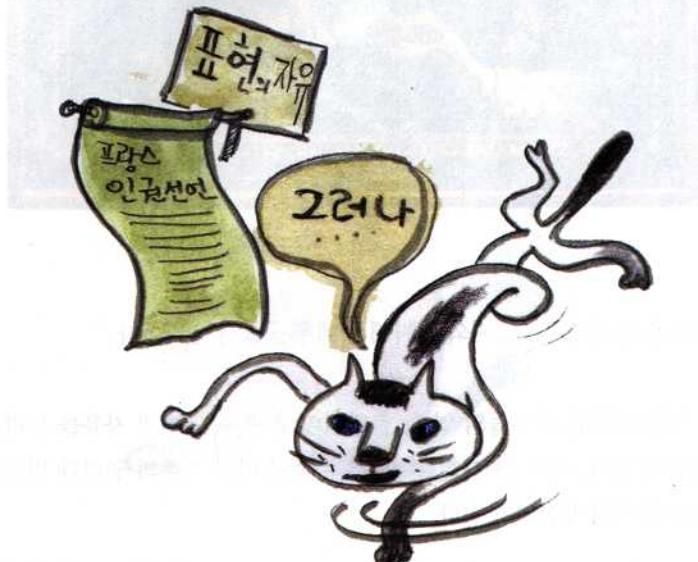
표현의 자유의 역사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프랑스 인권 선언〉 제11조 중에서 (1789)

17세기 근대시민혁명을 주도했던 부르주아(상공시민계급)는 지배적 봉건 세력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시민혁명 이후 표현의 자유의 수단인 언론과 출판을 부르주아들이 모두 장악했다. 소외된 민중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신문이나 책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표현의 자유는 형식적인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버렸다.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
나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니까



20세기에 매스미디어가 언론을 장악했다. 대규모 신문사와 방송국의 언론 독점은 일반 시민의 다양한 의사 형성을 가로 막았다.

유네스코는 1978년의 매스미디어 선언과 1980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국제 정보 질서가 정보 독점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누구나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했다. 매스미디어의 독점과 왜곡을 바로잡고 인류의 의사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다.

초기 네티즌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사이버스페이스는 모든 처리들, 관계들,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끊이지 않는 물결처럼 WWW에서 흐르고 있다.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출신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특권이 없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서나, 그것이 극히 희귀한 것이라도 침묵하거나, 같은 척 해야 하는 강요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1996) *

*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 1996년 2월 8일 전자프론티어재단 (<http://www.eff.org>)의 설립자 존 메리 바블로가 미국의 통신법 위법 등과에 반대하며 발표한 글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당하기도 한다. 이때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발언, 여성에 대한 폭력적 언사, 동성애를 혐오하는 발언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열의 금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도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 탄압받았기 때문이다. 1996년 음반과 영화 검열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군사독재정권은 수많은 영화와 음반을 검열했다. '패배적'이라거나 '불온'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은 많은 이들의 애창곡이 된 "동백아가씨", "아침이슬",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노래들이 금지곡이었다.

〈인간시장〉 〈그들도 우리처럼〉 〈부활의 노래〉와 같은 영화에서는 수사기관의 부패나 광주항쟁과 관련된 장면이 잘려 나갔다.



국가가 사전에 검열하지 않고 사후에 법률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과잉 규제는 금지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물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설사 국가 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급박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유발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가해져서는 아니된다."

- 유엔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표현 환경의 변화

표현의 자유의 원칙은 인터넷 시대에도 보장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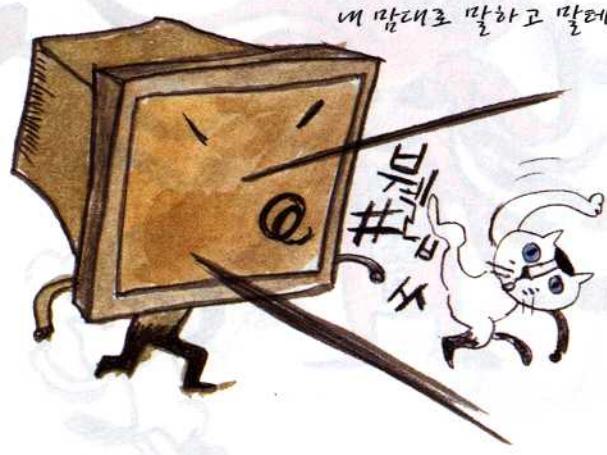
그러나 인터넷은 매스미디어와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인터넷이 매스미디어와 가장 다른 점은 ‘직접 말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언론과 출판에서는 누군가 사실 정보를 확인하고 예술성을 검증한 후에야 ‘표현물’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편집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는 대중 스스로가 언론인이다.

기존의 언론에서는 영웅이거나 희생자일 때만 등장할 수 있었던 ‘보통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주인공이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 일상 경험을 직접 쓰고, 그리고, 찍고, 올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저널리즘의 시대가 열렸다.

그만큼 인터넷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저급한 표현물이 많다. 거친 주장과 욕설도 자주 보인다. 자살사이트처럼 매스미디어에 비해 논란이 되는 사이트도 많다.



하지만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을 규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인 인류 역사상 최초로 팔십 노인부터 초등학교 어린이까지 누구나 동등한 표현의 권리를 부여받았다.

모두가 똑같은 언어 습관과 동일한 교양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욕쟁이 할머니는 블로그에 욕을 많이 쓸 것이고, 토론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짜증나는 댓글을 달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표현물에 대해 관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보기 좋은 글만 인터넷에 남겨둘 수는 없다.



또, 인터넷에는 매스미디어보다 더 많은 표현물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제한된 수의 방송과 신문이 언론을 주도하였으나, 이제는 네티즌들의 글, 그림, 영상이 언론을 주도한다. 과거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위축된 표현의 자유

역사적으로 표현물의 양적인 증가가 있던 시점에는 언제나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규제 요구가 뒤따랐다. 중세에는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나 귀족층만이 책과 지식을 독점하다가 인쇄술의 발전으로 독서가 대중화되었다. 그러자 교회와 정부가 표현물의 유통을 통제하고 나섰다. 인쇄소 설치를 제한하고 '금서목록'을 작성했다. 이것이 검열의 시작이다.

최근 인터넷에도 표현물의 양이 급증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 온 신문, 방송, 서적, 영화와 달리, 인터넷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인터넷 표현물도 규제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성폭력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물은 인터넷에서도 제한된다.

일반 사회나 매스미디어에서처럼 인터넷에서도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자기 표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때 법률은 인터넷 표현물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 이상의 규제를 시도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법률을 넘어선 인터넷 규제가 부쩍 늘고 있다.

글을 쓰기도 전에, 당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검사당한다. 정부와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내용심의 기구가 당신이 올린 글을 삭제할지 말지 감시한다. 당신이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시시콜콜히 보관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강심장이 제멋대로 키보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인터넷 이용자의 의욕을 꺾고 자기검열을 하도록 위축시키는 정책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 사전에 표현물을 검열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의 표현 의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일으키는 국가 정책도 검열이기 때문이다.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는,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겹침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2002)



모든 표현물에는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의 표현물을 삭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특히 정부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문, 방송, 서적 혹은 영화 등 표현물에 대하여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民間이 자율적으로 내용을 심의하고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법적 책임을 질뿐이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에서 규제 대상이 많고 파급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나서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인터넷 사이트의 자의적인 규제도 문제이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이나 노동 문제에 대한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 요청을 하면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최근 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지지하고 분유에서 나온 이물질을 폭로한 수많은 블로그 포스팅들이 죄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다.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다.



감시받는 인터넷

인터넷에서는 기술적 규제가 많이 이루어진다. 사이트 차단이나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받은 이용자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란 본래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실명 확인은 이용자들이 포스팅할 때, 댓글을 달 때, 글을 퍼갈 때, 감시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특히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소수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또 인터넷 사이트 차단이 만연하고 있다.

인터넷 회선 회사가, PC방이, 학교가, 국가가 수많은 사이트를 차단한다. 당신도 모르는 새. 인터넷 바다에서 맴맴 도는 당신은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다.

국가나 거대 기업이 일방적으로 차단의 기준을 정하고 차단하는 것은 검열이다.
무엇을 차단하고 차단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최소한 토론되어야 한다.

“당신이 문제의 콘텐츠를 볼 수 없다면 무엇이 차단되는지 알 수가
없다”

- 로렌스 레식, 〈코드〉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는 그만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터넷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인터넷에서 폭발되는 목소리들의 아우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실질적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올리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하자.
민주주의에는 토론이 필요하다.

부당한 검열에는 가차없이 항의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자.



인터넷 실명제

2008년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표현의 자유와 정치사상의 자유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거부합니다.

2007년 12월 19일 17대 대통령 선거의 악몽이 또 다시 시작되려 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 때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상에 지지하거나 반대의견을 표현하면 큰일이 나지요.
오는 4월 9일에 실시되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 180일은 이미 카운트 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정보네트워크센터와 민중언론 참세상은 국가의 감시통제 폭력 앞에
'표현의 자유' 그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 반대 행동에 독자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십시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http://freeinternet.or.kr>

프라이버시

- 60 세계인권선언 제1조
- 61 정보인권에 접속하시겠습니까?
- 72 정보인권에 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누구도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러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k양의 하루

